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을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2 장 국민의 출입국

제3 조 (국민의 출국)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(이하 "출국"이라 한다)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(이하 "사무소장"이라 한다)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(이하 "출장소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
②삭제 <2005.3.24>

제4 조 (출국의 금지)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, 2008.12.19>

1.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 2.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
 3.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·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
 6. 그밖에 제1 호 내지 제5 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
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07.12.21>
-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7.12.21>
- ④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7.12.21>

제4 조의2 (출국금지기간의 연장) ①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제4 조제2 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기 3 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그 밖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1]

제4 조의3 (출국금지의 해제) ①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②제4 조제2 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③그 밖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1]

제4 조의4 (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) ①법무부장관은 제4 조제1 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 조

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국이 금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7.12.21]

제4조의5 (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)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자는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,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1]

제5조 (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<개정 2001.12.29>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, 2005.3.24>

제6조 (국민의 입국)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(이하 "입국"이라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